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4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허성무 · 구자근 · 김기현
김문수 · 민홍철 · 김태선
강명구 · 김재원 · 김종양
서천호 · 윤영석 · 정점식
추경호 · 김상훈 · 최수진
최혁진 · 박성민 · 최형두
정진욱 · 김상욱 · 윤한홍
어기구 · 박희승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수도권 외의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법인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외의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4(수도권 외의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법인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u> <u>② 동일한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u>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